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51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송옥주
남인순 · 김병주 · 서영석
김선민 · 이건태 · 추미애
전종덕 · 서미화 · 백혜련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함.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이 복직 후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

이에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 하고,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0조의5(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u>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u>복무기간</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100조의5(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u> 국가는 <u>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u>

<u>제100조의5</u>(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략)	<u>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00조의6</u>(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
---	--